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참고자료

- 2.1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 보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을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전담체계 효율화 △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098

“**양육비 안 주는 뻘뻘한 부모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혼냈다**”

참고자료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대책, 실효성 드러나**

-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부터 10일까지 제28차 양육비이행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우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가하기로 하면서 안전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했던 나쁜 아버지 중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 [위키트리, 2023.02.19]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30021>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행자를 찾습니다**”

참고자료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한부모가족복지지원사업은 2010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이번 공모는 한부모가족복지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단체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112

“**다양한 가족 지원하는 '가족소통 참여사업' 공모**”

참고자료

-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소통 참여사업' 공모 실시(2.24.~3.16.)**

- 올해는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 맞는 가족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 1인가구 긴급돌봄 및 사회적경제망 형성 지원 ②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 돌봄 조부모 상담·교육지원 등 두 개 분야의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115

“**초등 학부모 절반 '돌봄 원해요'...2019년 30%→올해는 50%**”

참고자료

- 돌봄 희망 학부모 70% '방학 중에도 9~15시 돌봄 필요'**

- 초등학교생이나 예비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학교 수업 전후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돌봄공실을 늘려 원하는 학부모가 수월하게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2023.03.06]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30303146600530?input=1195m>

“**CCTV 설치·마음치유... '1인가구' 토닥토닥**”

참고자료

- 맞춤형 지원 팔 걷은 지자체들**

-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고독사나 범죄 노출, 사회적경제 약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신문, 2023.03.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7012002&wlog_tag3=naver

“**육아·출산휴가가 아직 20%대... 일·삶 균형, 턱없이 부족 [저출산 0.7의 경고]**”

참고자료

- 사회적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 병행해야**

- 육아휴가 제공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는 2012년 대비 오히려 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도 육아·출산휴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은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한정 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먼저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헤럴드경제, 2023.03.11]
<https://www.heraldcorp.com/View.php?ud=20230310000600>

“**딸·며느리에게 편중된 치매노인 돌봄노동... 가족탄력성 높아야**”

참고자료

-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이 치매노인을 더 잘 돌본다**

-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며느리 10명당 하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딸 선호 현상이 갈수록 자녀가 일종의 양육 비호아를 맡게 하는 노후에 아들보다 딸이 더 잘 돌볼 것이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 치매노인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탄력성이 꼽혔다. 가족탄력성은 가족구성원 전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실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이 치매노인을 더 잘 돌본다고 한다.

⇒ [서울신문, 2023.03.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35000418wlog_tag3=naver

“**한시적 양육비 '깊어야 할' 비양육자 70%가 월급 0원**”

참고자료

- 한부모 가정 지원 방안 마련해야**

-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행원이 선지급한 양육비를 갚아야 하는 비양육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월급(월평균 보수액)이 0원이거나 1000원 이하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 2023.03.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3290.html>

가족 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 인) | 2023-02-17 |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사실임. 2022년 발간된 경찰 치안통계서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여성 가해자는 13,128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를 보이는 등 남성 피해자가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9제1항제4호). |
| 이혼·친자관계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2023-2-20 |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제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속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지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나주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조치분쟁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지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1항서 신설).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3-3-10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 절차와 받고 있던 분별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정한 경우,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인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4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846조). |
| 조정·소송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3-2-24 (입법예고중) | 현행법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 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빠른 해결이 곤란함. 이에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1항).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 2023-2-23 (입법예고중) |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범위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판결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존중을 기하여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석의원 등 11인) | 2023-2-24 (입법예고중) |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상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량하는 소기능을 가진 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 |
| 일가정 양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희의원 등 11 인) | 2023-03-14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휴가' 하는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 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6항을 둠).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의원 등 11 인) | 2023-03-13 (입법예고중)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휴가 대체하여 30일전까지 하도록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에 불리한 점이 있어 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익의원 등 10 인) | 2023-03-13 (입법예고중) | 남임치료를 지속적·장기간의 치료로 필요하다는 특정이 있음에도, 휴가기간은 실제 남임치료를 위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공무원 인사제도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남임치료를 휴가 대체하여 30일 휴가를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남임치료를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2 인) | 2023-03-10 (입법예고중) | 최근 육아휴직 부여 폭적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원, 기존에 근로자가 수백명씩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직무 조정 등을 통한 현실상의 직위 하향 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등 불리한 경우라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우덕의원 등 10 인) | 2023-03-08 (입법예고중)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한 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거나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할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6항 신설).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현의원 등 12 인) | 2023-03-07 (입법예고중) | 현행법은 사업주가 하위급 직장여성에게 임신·출산휴가 청구와 관련하여, 그 대상은 상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임직원 500명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하위급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아야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합의 및 상급자 고용을 촉진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 3 신설).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울의원 등 14 인) | 2023-02-28 (입법예고중) |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하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제도 부모 30일이 초과하면 육아휴직의 용역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은희의원 등 11 인) | 2023-02-27 (입법예고중)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범주를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 2 제1항·제3항·제4항).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은희의원 등 11 인) | 2023-02-22 (입법예고중) |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사용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휴가'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 2 제1항·제3항·제4항). | |

가족 관련 연구 동향

| 구분 | 연구과제 | 주요내용 | 참고자료 |
|--------|--|--|---|
| 제도·법 |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의 권리보장 방안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협의이혼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서 향후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절차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혼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실효를 조력하는 전문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 「사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2-16」 https://jpr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7&searchh=&searchName=&searchYear=&currentPage=10&pageNum=1&seq=1543 |
| |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친밀관계 폭력의 일종인 데이트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19대 국회 이래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본 보고서는 데이트폭력의 개념, 기존 법안 내용 검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목적 확립을 위한 범죄화 방향 제시 등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 |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Vol.14 No.2, 2023」, www.dpb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13975 |
| 상담 |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인법 과제 : 인천 남동구 아동복지대 상담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피해율도 높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 따르면, 위기행위 위반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 전력 부여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자 한 조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3. 02. 24」 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43 |
| |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 의지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 자녀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2023. 02. 28」 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90&brdSeq=41569 |
| 아동양육시설 |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의 가능성 요소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동양육시설 상담관과의 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연구- |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기능들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심리상담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기능으로는 채널링 기능의 확대, 화면 공유 기능, 예약 기능, 심리상담 취소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 2023」, 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mat_type=1a0202e37d52c72d&ctrl_no=a965503be54361164884a653232111ff0&keyWord=상담 |
|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의 업무경험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 중사하는 임상심리상담원의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임상심리상담원의 경험이 가진 의미와 현재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 결과, 임상심리상담원들은 기관 내 중사자와의 갈등, 고립, 업무 체계성에 대한 고민, 슈퍼비전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사자 범정부에 맞게 중립적인 아동양육시설 상담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사자 교육, 지속적인 슈퍼비전 방안 개발, 협의제 활성화, 중앙기구 설립, 임상심리상담원의 시설 내 워킹 확립에 대해 제안함. |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2023」, www.dpb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02649 |
| 가족 복지 | 사회적경제 재난불평등에 대한 대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는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점,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경제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Focus 제 435 호 (2023-01), 2023. 03. 13」, www.kihasa.re.kr/public/regular/foocus/view?seq=52532 | |

2023년 3월